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63

제출년월일 : 2012. 8. 6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아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,

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가 2011.8.1.자로 기존 연 3% ~ 6%에서 연 2.4% ~ 4.1%사이로 인하되었고, 이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도 2012.3.15.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기존 연 6%에서 연 4%로 인하됨에 따라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하며,

기타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점유·사용자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유재산 대부료 인하

○ 사회적기업에 구유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여 일자리창출 지원

개정 전	개정 후	관련 조항
◦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이상	◦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	제25조제5항제11호

나.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

○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

개정 전	개정 후	관련 조항
◦ 연 6%	◦ 연 4%	제34조제1항, 제2항

※ 이자율 인하에 따른 구수입 감소 내역(연간)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분납건수	이자수입(개정전)	이자수입(개정후)	감소금액
2012	212	287	191	96

다.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

○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을 매입한 점유·사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구민들의 부담 완화

개정 전	개정 후	관련 조항
◦ 5년 이내(최초계약자)	◦ 10년 이내(최초계약자)	제34조제1항제8호
◦ 일시납(권리승계자)	◦ 5년 이내(권리승계자)	제34조제2항제5호

3. 개정근거

가.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

나.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분할납부 기간은 「공유재산

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연 4%~6%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제1호 (법률 제11275호, 2012.2.1.)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 (서울특별시 조례 제5217호, 2012.1.5.)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 (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761호)

○ 「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」 (기획재정부고시 제2011-7호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(대통령령 제23718호, 2012.4.10.)

○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36조제1항 및 제2항 (서울특별시 조례 제5162호, 2012.3.15)

나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7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2.6.14. ~ 2012.7.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: 조례안 원안 동의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: 평가대상 아님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2.8.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제34조제1항제1호 중 "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"를 "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3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
7. 마포구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
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할 때

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연 6퍼센트"를 "연 4퍼센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,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대부료의 등의 요율) ① ~ ④ (생략)	제25조(대부료의 등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	⑤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11.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**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**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** 매각할 때	1. ---------- ---------- **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**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 6. 제3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
	<신 설> 7. 마포구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
	<신 설> 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할 때
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<삭 제>
1. 제3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	
2. 마포구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	
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	②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**연 6퍼센트**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----- **연 4퍼센트** -----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**
④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